

## 한의학대학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장) ① 학장은 한의학대학의 행정과 학사를 통할하고, 한의학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부속 기관과 시설의 운영을 관장한다.

제3조(부학장) ① 한의학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학장은 학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조(학과장) ① 한의학대학에 한의예과장과 한의학과장, 한의임상학과장, 간호학과장, 간호임상학과장을 두며,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한의예과장, 한의학과장, 간호학과장은 각각 한의예과와 한의학과, 간호학과의 운영을 통할하며, 학생 수업, 생활 지도, 성적 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한의임상학과장과 간호임상학과장은 각각 한의임상과 간호임상 분야에서 학생 수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제5조(학사운영위원회) ① 한의학대학 학사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회는 학장, 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간호학과장, 행정지원실장으로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한의임상학과장, 간호임상학과장에 학사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운영회는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교실의 설치) ① 학생교육과 한의학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의학대학에 교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교실의 신설과 통·폐합은 한의학대학 전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7조(주임교수의 임명 및 임무) ① 한의학대학 한의예, 한의학과 각 교실에는 1인의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교수 및 부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단,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주임교수 서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임상교실의 주임교수는 병원 진료과의 과장을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임교수는 소속 교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주임교수회) ① 한의학대학에 각 교실 주임교수로 구성되는 주임교수회를 둔다.

② 주임교수회는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주임교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기구·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
3.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제반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전체교수회) ① 한의학대학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전체교수회를 둔다.

② 전체교수회는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전체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학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한의과대학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한의학교육실 설치) ① 한의과대학의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한의학교육실을 두며, 한의학교육실장은 한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한의학교육실장은 한의학교육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교과과정 운영) ① 한의과대학은 일반교과목(교양과목, 필수과목)과 통합교과목(수직통합과목, 수평통합과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교과목별 책임교수를 둔다. 다만, 일반교과목의 책임교수는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② 통합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교과목별 간사를 둔다.

③ 책임교수는 담당교과목 지도 및 성적처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책임교수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책임교수 및 간사는 학장이 위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세칙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